

자동차보험 유형별 보상 사례

-주차 차량의 손해 배상 책임-

김 회 중

(한국자동차보험(주) 손해사정부 차장)

자동차 대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데도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주차 시설이 아닌 장소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현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도로상의 위법 주차 차량의 증가는 교통의 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주차 차량의 후미를 오토바이가 추돌하는 등 주차 차량을 추돌하는 자동차 사고가 늘어나게 된다. 주차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는 주행하는 차량 상호간의 충돌 사고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추돌한 차량측이 전방 주시를 하지 않은 과실이 주원인으로 주차 차량에게는 잘못이 없다. 그러나, 주차 차량이 주차 금지 장소에 주차한 경우, 주차시 도로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여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경우, 고장으로 주차하면서 미등·차폭등을 켜는 등 후속 차량이 주차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추돌한 차량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주차 차량의 손해 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도로 교통 법규상에서는 자동차는 법령에 규정된 일정한 장소에는 주차가 금지되어 있으며, 주차할 경우에도 도로의

가장자리에 주차하는 등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고장으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상에 주차할 경우에는 후속 차량이 주차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적색의 섬광 신호(삼각대) 등을 설치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주차 차량의 운전자는 이와 같은 법 규정을 잘 지켜 후속 차량의 추돌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다.

만일 주차 차량의 운전자가 이와 같은 주차 의무에 위반하여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될 때에는 과실 책임이 생길 수 있다. 주차 차량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획일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통상 도로의 폭, 교통량 등 사고 당시의 교통 상황, 야간인지 주간인지 여부, 주차 방법의 적정성, 주차시 운전자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였는지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주차 추량에 기인된 사고는 반드시 후속 차량의 과실이 전제되므로 주차 차량의 손해 배상 책임이 안정되는 경우에도 현실적으로는 그 과실 비율이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주차 차량의 과실 비율을 산정하는 방법을 요약해

보면, 기본적으로 주차 차량의 과실을 없는 것에서 출발하여 주차 금지 장소에의 주차, 주차 방법의 부적절, 야간 등 시계 불량, 미등·차폭등·삼각대 표시 조치 미강구의 경우에는 주차 차량의 과실 점을 가산한다. 한편 추돌 차량의 현저한 전방 주시 태만, 속도 위반, 무면허, 음주 등 중과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주차 차량의 과실 점을 감산하여 최종적으로 과실 비율을 정하게 된다.

(사례 I)

저녁 8시15분경. 시내 상점 가의 편도 2차선 도로(노폭 15m)에서 인도로부터 약 20cm 떨어진 도로 한쪽 가장자리에 우측 깜박이 신호등을 켜놓고 트럭이 주차한 것을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 보지 못하고,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트럭 뒤 적재함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여 뇌출혈로 사망함.

이 경우, 위 사고 장소는 주·정차 금지 구역이 아니며, 노폭 등 도로 사정으로 보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조금만 전방 주시를 하였다면 피해갈 수 있었음에도 음주·만취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트럭을 충돌하였으므로 주차 차량에게는 과실이 없다.



〈사례 II〉

야간에 강변 도로상으로 15t 덤프 트럭을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고장을 일으켜 위 차량을 2차선 우측에 세워두고 뒤쪽 깜박이등을 켜 놓은채, 위 차를 견인하기 위하여 견인차를 부르러 정비업소에 간 사이에, 승용차가 위 덤프 트럭 뒷부분을 충격하여 승용차 운전사가 간 파열상으로 사망.

위 사고 장소인 강변도로는 사고 당시에는 자동차 전용 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로서 트럭 운전사는 미등·차폭등을 켜 놓았고, 사고 지점은 편도 2차선이며, 1개 차선의 노폭은 5m, 노견폭은 1m이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야간에도 장해물의 식별이 어렵지 않은 점. 또한 사고 장소는 전방 130m 지점부터 사고 지점이 보일 정도로 시계가 양호한 점. 위 트럭운전자는 사고 당시 트럭을 노견에 바싹 붙여서 주차하여 2차선의

나머지 폭이 약 3.5m가량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용차 운전자가 주취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채 운행한 점을 감안하면 주차한 덤프트럭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

〈사례 III〉

오후 5시 15분경. 시골 포장 도로를 운행하던 시내 버스가 마을 앞에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키고 출발하려던 중, 마침 뒤에서 운행하던 타이탄 트럭이 버스의 후미를 충격, 트럭 운전자가 사망함.

위 사고 장소는 편도 1차선의 3.6m도로로서 위 버스는 중앙선에서 약 1m 거리를 두고 도로 우측 가장 자리에 정차한 점. 정차 지역은 건너편에 마을이 있어 통상 그곳에는 시내 버스가 정차하는 것이 관례인 점. 트럭운전자는 제동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스키드마크가 없음) 줄음 운전 등으로 전방 주시를 소홀히한 점. 사고

장소는 적선도로로서 시계가 양호한 점을 감안하면 정차한 시내버스에게는 책임이 없다. 다만 정류장이 아닌 곳에 정차한 행위 자체가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에 해당되나,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있다하더라도 그 행위가 사고 발생과는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

〈사례 IV〉

야간에 주차 금지 지역인 편도 1차선 도로(노폭3.5m)상에 미등·차폭등을 켜지 않은채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트럭을 주차시켜 두었는데, 마침 그곳을 운행하던 125cc 오토바이가 주차트럭을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위 트럭은 도로상에 불법 주차하면서 차량 후면에 삼각대 등 안전표지를 하지 아니한 점. 사고 장소 1차 선상의 노폭1.35m를 차지한 상태로 야간에 장시간 주차한 점을 감안하여 주차 차량의 과실을 30% 인정하였다. ⓒ